

업무협정서

해외건설협회와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는 우리나라 u-City 분야의 발전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 단체간 신의성실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한다.

제1조 (업무협력의 범위)

해외건설협회와 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(이하 양 단체)는 u-City 분야의 발전과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상호 협력한다.

1. 해외 u-City 개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양 단체 회원사간 협력
2. 해외 u-City 개발 프로젝트 관련 정부발주 연구용역의 공동 수행
3. 해외 u-City 개발 후보지에 대한 시장 조사단 및 사절단 파견
4. 해외 u-City 개발 관련 정보교환 및 세미나, 설명회 등의 공동 개최
5. 해외 u-City 개발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, 진출전략, 금융 등과 관련된 정책지원
6. 기타 상호 관심사에 관한 협력활동

제2조 (정보교류 및 역할)

양 단체는 u-City 분야와 관련하여 이미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각종 연구, 교육 및 시장동향 관련 정보의 교류에 상호협력하며, 기관 특성에 맞는 분야에서 주된 역할을 한다.

1. 양 단체간의 각종 연구 및 교육 정보의 교류
2. 양 단체간의 u-City 분야 동향 및 해외건설시장 진출 관련 정보의 교류

제3조 (신의성실 및 신뢰유지의무)

양 단체는 추가적인 합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만나 협의하며,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협약서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본 협정서의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또는 타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한다.

제4조 (경비부담)

제반 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내외에서 소요되는 직접 및 간접비용의 부담 등은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한다.

제5조 (효력, 개정 및 종료)

본 협정의 효력은 협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하고 상호 협의하여 일부 보완,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으며, 협정서 유효기간 종료에 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.

양 단체는 본 협정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협정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08년 9월 10일

해 외 건 설 협 회

한국유비쿼터스도시협회

회 장 이 용 구

회 장 이 종 상





회 장 남 중 수

